

정부는 파견사업주의 과도한 중간이익 방지를 위해 파견수수료 상한 설정 등을 검토·추진 중에 있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11.26.(수) 한국일보, “‘월 12만원 중간착취’ 조사까지 해놓고... 보호 대상서 파견직 뺀 노동부”

2. 설명 내용

- 정부는 파견사업주의 과도한 중간 이익 방지 및 파견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,
 -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 임금 등 세부 항목을 명시하도록 하고, 파견수수료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검토·추진 중에 있음
- 또한, 매년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 여부에 대해 지도·점검하고 있고,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, 차별적 처우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있음

담당 부서	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	책임자	과 장	강승헌 (044-202-7570)
		담당자	사무관	이용우 (044-202-7575)